

성적포기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16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2012.02.01.제정

2014.03.01.개정

2020.09.25.개정

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삭제 <2014.03.01.>

제2조(정의) 삭제 <2014.03.01.>

제3조(신청시기 및 절차) 삭제 <2014.03.01.>

제4조(자격 및 범위) 성적포기 자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삭제 <2014.03.01.>
- 2. 삭제 <2014.03.01.>
- 3. 삭제 <2014.03.01.>
- 4. 삭제 <2014.03.01.>
- 5. 삭제 <2014.03.01.>
- 6. 삭제 <2014.03.01.>
- 7. 삭제 <2014.03.01.>

제5조(성적처리) 삭제 <2014.03.01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성적포기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16				
제정일자	2012.02.01.				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				
페이지 수	2/3			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성적포기 규정

	문서번호	BSKS-1-1-16
	제정일자	2012.02.01.
	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	페이지 수	3/3

[별지 제1호] 삭제 <2014.03.01.>

성적포기 신청서				계	과장	부처장	처장			
			결 재							
학고	라			학번						
성명		학년/	반							
연락처										
포기신청 과목										
연번		과목명 학점		이수	년도	- 및 학기	성격	덕 .	비고	
× 80	L 학점	이 넘는 범위내에서 전공필수	 수를 제외	니 기한 모든	- 과	목 포기 기	가능.			
ی	위와	같이 취득 성적을 포기하고	<u>1</u> 자 합니'	다.						
		넡	1	월		일				
		_	-	_		L				
	위 본인 : (인)									
				,	지도	교수 :		(<i>c</i>	인)	
◎ 붙임서류 : 성적증명서 1부										